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주민 편의에 부합하는 부서명칭 변경 및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부서명칭 변경(안 제3조제1항)

- 도시과 ⇒ 도시건축과

나. 실과 분장사무 조정(안 제3조제2항)

-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업무 : 자치행정과 ⇒ 기획감사실
-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: 주민생활지원실 ⇒ 자치행정과
- 공교육지원, 평생학습 관련 업무 : 기획감사실 ⇒ 자치행정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10.26.~2011.11.15.(21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시과”를 “도시건축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

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공교육 지원, 평생학습 관련 업무

하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

제3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시건축과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
② 「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
③ 「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평창군건축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・과의 설치)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・주민생활 지원실・민원봉사과・자치행정과・재무과・문화체육과・관광경제과・환경과・ 산림과・건설방재과・도시과를 둔다.	제3조(실・과의 설치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도시건축과----------.
②실・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	②---------- --------.
1. 기획감사실	1. ----------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아. 혁신분권 및 공교육 지원, 평생학습 관련 업무	아.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
자. ~ 카. (생 략)	자. ~ 카. (현행과 같음)
2. 주민생활지원실	2. -------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	<삭 제>
마. ~ 자. (생 략)	마. ~ 자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자치행정과	4. ----------
가. ~ 자. (생 략)	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차.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	차. 공교육 지원, 평생학습 관련 업무
카. ~ 파. (생 략)	카. ~ 파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하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도시과	11. 도시건축과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사유

- 부서명칭 변경과, 실과 분장사무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과장 이 상 진
연락처	(033) 330 -2234

관계법령 발췌

“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**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되**, (이하생략)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